

영등포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6.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盧 相 沃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3호로 2012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 개정되어 우리구도 관련 조례명 등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적용범위와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요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라.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 법률 제9887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형식은 총9장, 42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령의 이해와 적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 안 제2장 시장의 관리와 운영에는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용고객 및 상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였으며
- 안 제3장 인정시장의 운영에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

- 또는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취소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정시장의 지정 및 관리, 취소업무를 명확히 하였고
- 안 제4장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구역의 관리를 규정하여 상권의 통합과 규모의
적정화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개정으로 보이며
 - 안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는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시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였고
 - 안 제6장 상인회 설립과 등록에는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상인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예산지원,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상인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는 제28조와 제2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여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관리자의 업무태만 시 지정취소 규정을 둠으로써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 안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는 제30조부터 제35조 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관리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 안 제9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는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신설된 조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한 자와 이 법에 의한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 상점가의 상인을 대표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 안 부칙은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제2조 유효기간에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의 유효기간에 근거한 것임.

○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제시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한 개정이나 2006년 3월 9일 제정된 이후 처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 등 변경요인이 발생시 신속히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참 고 자 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

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등록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

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7945호, 2006.4.28>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